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0678(본소), 2023나80685(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0678(본소), 2023나80685(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1528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변론종결 2024. 7. 10.

판결선고 2024. 9.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15288(본소),
2022가단21529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행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10호증)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8. 20. 제출한 참고서면과 첨부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은 동일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은으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한, 판사 조정민, 판사 조현준

1) 항소장 항소취지 제1항 기재 “소장 부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제1심 제3차 변론조서 참조).